

주안6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9. 12 ~ 9. 15(4일)
- 감사범위 : 2014. 10. 1. ~ 2017. 8. 31. 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반원 : 감사팀 3명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센터 운영실태 전반
 - 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물품구입 등 적정여부
 -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대책의 효율적 추진실태
 - 각종업무(서무,주민등록,민방위,청소 등) 추진실태

□ 감사결과 내역

구 분	처분 현황 (건)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비 고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세입)	환급· 감액		
계	20	17	10	7	3	2	1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붙임』

『붙임』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주민자치

○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감면·환불) 제 1항에 의하면 수강료는 접수기간 중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가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관에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오전에 징수한 수강료는 오후에, 오후에 징수한 수강료는 익일 오전까지 입금처리하며,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 6호 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 10호 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주안6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인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시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고, 향후 회계출납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직권조치 부적정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1.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전수조사 부적정

-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일제정리에 따른 전수조사는 전 세대에 대한 세대별 명부를 작성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과 실제거주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주안6동에서는 [표1]과 같이 2015년 부터 2017년 까지 매년 1회 정기 사실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통장과 직원을 합동 조사반으로 구성하여 전 세대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는 선별하여 2차 개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표1]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연도	통	세대수	사실조사 기간		합동조사반 편성		비고
			1차(전체)	2차(개별)	공무원	통장	
2015	20통	9,041	2015.03.11~ 2015.03.24	2015.03.25~ 2015.03.31	11명	20명	
2016	20통	9,120	2016.01.15~ 2016.02.02	2016.02.03~ 2016.2.15	12명	20명	
2017	24통	9,771	2017.01.16~ 2017.02.05	2017.02.06~ 2017.02.19	12명	24명	

- 1차 전 세대에 대한 조사는 세대별 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대주(부재시 세대원)의 확인을 받고, 현역입영자, 국외이주자, 1인 세대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반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하기로 하였다.

- 그럼에도 주안6동에서는 2015년, 2016년,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면서 「표2」와 같이 2015년 3개통 1,310세대, 2016년 2개통 731세대, 2017년 3개통 969세대에 대하여 세대주 확인 없이 1차 전세대 사실조사를 마무리하였다.

[표2] 일제정리 전 세대 사실조사 부적정 실시 현황

연도	통	대상 세대수	세대주 미확인 세대수	비고
2015	6	547	523	
	7	346	261	
	17	526	세대별 명부 없음	
2016	7	339	197	
	17	534	534	
2017	7	346	230	
	10	203	203	
	17	536	536	

2.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미 작성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10조에 의한 신고사항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부실하게 신고한 때,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며 사실조사서의 작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자세히 적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통장이나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불일치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가 가능하다.
- 따라서 사실조사서는 직권조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직권조치시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아야 함에도, 주안6동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고, 공고, 직권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표3]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미작성 현황

연번	사실조사서 미작성 세대			최고기간	공고기간	직권조치 일자	비 고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1	이**	-	1	2015.04.15~ 2015.04.21	2015.04.22~ 2015.04.28	-	
2	이**	-	1	2015.04.15~ 2015.04.21	2015.04.22~ 2015.04.28	-	
3	이**	-	5	2015.04.15~ 2015.04.21	2015.04.22~ 2015.04.28	-	
4	남**	-	1	2015.04.15~ 2015.04.21	2015.04.22~ 2015.04.28	-	
5	김**	-	1	2015.04.15~ 2015.04.21	2015.04.22~ 2015.04.28	-	
6	김**	-	1	2015.08.26~ 2015.09.03	2015.10.06~ 2015.10.12	2015.10.13	
7	강**	-	1	2015.08.26~ 2015.09.03	2015.10.06~ 2015.10.12	2015.10.13	
8	김**	-	1	2015.08.26~ 2015.09.03	2015.10.06~ 2015.10.12	2015.10.13	
9	최**	-	1	2015.08.26~ 2015.09.03	2015.10.06~ 2015.10.12	2015.10.13	
10	홍**	-	1	2015.08.26~ 2015.09.03	-	-	
11	송**	-	1	2015.09.10~ 2015.09.17	2015.09.18~ 2015.09.24	-	
12	최**	-	1	2015.12.12~ 2015.12.09	2015.12.12~ 2015.12.09	-	
13	김**	-	1	2015.12.12~ 2015.12.09	2015.12.12~ 2015.12.09	-	
14	이**	-	1	2015.12.12~ 2015.12.09	-	-	
15	신**	-	1	2015.12.12~ 2015.12.09	2015.12.12~ 2015.12.09	2015.12.18	
16	황**	-	1	2015.12.12~ 2015.12.09	2015.12.12~ 2015.12.09	2015.12.18	
17	정**	-	1	2015.12.12~ 2015.12.09	-	-	
18	변**	-	1	2015.12.12~ 2015.12.09	-	-	
19	김**	-	1	2015.12.12~ 2015.12.09	2015.12.12~ 2015.12.09	2015.12.18	
20	백**	-	1	2015.12.12~ 2015.12.09	2015.12.12~2 015.12.09	2015.12.18	
21	김**	-	1	2015.12.12~ 2015.12.09	2015.12.12~ 2015.12.09	2015.12.18	

3. 직권조치 사실 통지 절차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 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가 위와 같이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사실조사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주안6동에서는 아래[표4]와 같이 거주불명 등록을 실시하면서 직권조치 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였다.

[표4] 주민등록 직권조치 절차 부적정 현황

직권조치일자	사유	인원	통지일자	공고일자	비고
2015.04.29	거주불명	26	2015.04.29	2015.04.29	
2015.09.01	거주불명	10	2015.09.01	2015.09.01	
2015.09.25	거주불명	5	2015.09.25	2015.09.25	
2015.10.13	거주불명	10	2015.10.13	2015.10.13	
2015.12.18	거주불명	5	2015.12.18	2015.12.18	
2016.03.17	거주불명	38	2016.03.17	2016.03.17	
2016.07.28	거주불명	3	2016.07.28	2016.07.28	
2016.09.13	거주불명	1	2016.09.13	2016.09.13	
2016.09.27	거주불명	9	2016.09.27	2016.09.27	
2016.11.30	거주불명	5	2016.11.30	2016.11.30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주의]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시 관련규정에 따라 통장교육 철저, 직권조치 기초자료인 사실조사서는 육하원칙에 의한 작성과 신고의무자 확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직권조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하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 확인 소홀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접수한 동장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전입신고 확인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고
- 통장은 전입신고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서명한 후 그 결과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동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동에서 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또한, 통장의 전입신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안6동의 2015년 6월, 2016년 5월, 2017년 4월 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서 사후확인서를 확인해 본 결과 [표1]과 같이 전입신고 사후 확인을 소홀하게 실시하였다.

[표1] 전입신고 사후확인 현황

월 별	전입신고 건수	사후확인 실시	사후확인서 미실시	비고
2015년 6월	240	170	70	
2016년 5월	307	288	19	
2017년 4월	237	193	44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주의] 관련규정에 따라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
업무연찬 하시고 주민등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미 징수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주민등록증의 분실로 재발급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1명당 5,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서 접수시 징수하고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에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소인(인증기 사용) 하여야 한다.
- 주안6동에서는 2017. 4. 13. 한** 등 5명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접수 받으면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미 징수 현황

일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재발급사유	수수료	비고
2017.04.13	한**	-	남구 주안중로	분실	5,000원	
2017.04.17	전**	-	남구 경원대로	분실	5,000원	
2017.04.20	유**	-	체천시 청풍호로	분실	5,000원	
2017.06.02	손**	-	남구 경원대로	분실	5,000원	
201706.04	김**	-	서구 불로동	분실	5,000원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 징수 및 인증기 소인 작업에 철저를 기하시고 미 징수한 수수료는 추징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번호부여는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 표시를 하고 담당·주무가 직접 “번호부여대장”의 확인란에 날인하고 “번호조립부”의 실제 사용한 번호 우측상단에 소인하여야 한다.
- “번호부여대장”은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고 반드시 생년월일,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번호대장에 등재하여 등재 누락으로 인한 중복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번호 부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주안6동에서는 “번호부여대장”에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였고, 아래 [표]와 같이 출생에 따른 조** 등 15명을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면서 해당되는 생년월일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년월일에 기재하였고, 임** 등 10명은 번호부여대장에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부적정 현황

연도	성명	부여번호	부적정 내용	비고
2015	조**	-	번호부여대장 15.01.07에 누락 번호부여대장 15.01.05에 등재	
2015	임**	-	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2015	김**	-	번호부여대장 15.05.12에 누락 번호부여대장 15.02.12에 등재	
2015	맹**	-	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연도	성명	부여번호	부적정 내용	비고
2015	김**	-	번호부여대장 15.04.19에 누락 번호부여대장 15.04.16에 등재	
2015	장**	-	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2015	오**	-	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2015	김**	-	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2016	이**	-	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2017	장**	-	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2017	김**	-	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2017	김**	-	번호부여대장 17.05.10에 누락 번호부여대장 17.05.11에 등재	
2017	김**	-	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2017	문**	-	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2017	홍**	-	번호부여대장 17.07.20에 누락 번호부여대장 17.08.10에 등재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시정]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자 업무 연찬하시고, 잘못 기재된 번호부여대장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1.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신고(신청)지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미이행

-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생, 사망신고를 지연한 자에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과태료를 부과 할때에는 「질서행위 위반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된다,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안6동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2017. 8. 31.까지 아래 [표]와 같이 주민등록 과태료(총 207건, 8,354천원),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총 19건, 312천원)을 부과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통지(결재) 없이 과태료를 감경 부과하였다.

[표] 사전통지 미 실시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천원)

구분	부과내용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비고
		계	'14년 11월~	'15년	'16년	'17년 9월	
주민등록	증 발급 지연	17 / 150	1 / 8	7 / 56	3 / 26	6 / 60	
	재등록 신고	190 / 8,204	9 / 392	63 / 2,676	69 / 2,888	49 / 2,248	
가족관계	출생신고 지연	11 / 152	0 / 0	6 / 96	4 / 40	1 / 16	
	사망신고 지연	8 / 160	0 / 0	2 / 72	5 / 72	1 / 16	

2.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84조에 따라 출생 및 사망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법 제122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과기준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있다.
- 주안6동에서는 2015.10.19. 박** 사망신고 및 2016.3.23 이** 출생신고를 접수 처리 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착오 부과한 사실이 있다.

[표1]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적정 부과 현황

구분	신고자	발생일	신고일	지연기간	과 태 료(원)		비고
					착오부과액	정 당	
사망	박**	2015.07.09	2015.10.16	1월이상 3월미만	32,000	24,000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기준
출생	정**	2016.02.18	2016.03.23	7일미만	0	10,000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시정] 과태료 부과 시 관련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시고 착오 부과한 호적 과태료는 환급 및 추징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자체교육 인정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민방위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규정에 따라 그 승선·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같음하고,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주안6동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자체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해당 직장 등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양** 등 2명에 대하여 자체교육훈련을 참석한 자로 인정하였다.

[표] 자체교육 인정 부적정 현황

연번	성명	민방위대명	생년월일	자체교육사유	교육훈련 인정 연도	비고
1	양**	00통 민방위대	-	시내외 버스운전자	2016	
2	이**	00통 민방위대	-	항공승무원	2016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주의] 민방위 자체교육 훈련 대상자 명부 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 확인·지도 등 민방위 교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민방위 당연제외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민방위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는 제외된다.
- 아울러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5급으로 판정되면 전시근로역으로 군복무 또는 예비군 등이 면제되어 만 20세부터 민방위대로 편성·관리되고, 6급으로 판정되면 군복무, 예비군 및 민방위까지 편성 제외며, 7급으로 판정되면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등급판정이 되기 전까지는 만 20세부터 민방위대로 편성·관리, 이후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주안6동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예비군 사유로 관리하고 있는 당연 제외자 문** 등 15명은 전시근로역 병역 처분으로 민방위 편성대상자 임에도 당연제외자로 부 적정하게 편성·관리하였다.

[표1] 민방위대 당연제외자(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예비군) 부적정 편성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당연제외 정보		병역처분 확인결과		비고
			제외일자	사유	일자	처분내용	
1	문*	-	03.01.01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01.11.30	전시근로역	
2	김**	-	04.01.02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07.01.29	전시근로역	

연번	성명	생년월일	당연제외 정보		병역처분 확인결과		비고
			제외일자	사유	일자	처분내용	
3	신**	-	06.02.24	현역병입영대상	07.01.29	전시근로역	
4	김**	-	06.01.02	현역병입영대상	07.07.27	전시근로역	
5	김**	-	06.01.01	현역병입영대상	09.02.03	전시근로역	
6	최**	-	06.01.01	현역병입영대상	11.01.31	전시근로역	
7	김**	-	09.07.30	현역병입영대상	09.07.30	전시근로역	
8	김**	-	07.05.09	현역병입영대상	13.05.20	전시근로역	
9	박**	-	08.01.01	현역병입영대상	07.06.26	전시근로역	
10	지**	-	09.01.01	현역병입영대상	11.08.18	전시근로역	
11	이**	-	10.01.01	현역병입영대상	13.05.21	전시근로역	
12	안**	-	11.01.01	현역병입영대상	16.08.02	전시근로역	
13	신**	-	11.01.01	현역병입영대상	12.05.24	전시근로역	
14	정**	-	12.01.01	현역병입영대상	13.05.27	전시근로역	
15	박**	-	03.01.02	예비군	00.05.18	전시근로역	

- 또한, 아래 [표2]와 같이 김**, 채**은 등록장애인이 정지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 까지 민방위 당연제외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 등 3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에도 지역민방위대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2] 민방위대 당연제외자(등록장애인) 부적정 편성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민방위 편성정보		장애등급 확인결과		비고
			일자	내용	일자	처분내용	
1	김**	-	03.04.24	등록장애인	10.12.09	자격정지	
2	채**	-	15.04.10	등록장애인	16.03.17	등록취소	
3	가**	-	09.06.03	00통 민방위대	17.02.03	뇌병변6급	
4	김**	-	10.01.01	00통 민방위대	16.04.20	정신3급	
5	김**	-	14.01.01	00통 민방위대	15.04.30	정신2급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시정] 민방위 당연제외자에 대한 관련 공부·사실 확인 등을 통해 적법한 자원편성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착오 편성된 민방위 자원은 재편성 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반장 명절상여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회계

○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③항에 의하면 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 그러나, 주안6동에서는 [표] 와 같이 반장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반장 명절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표] 반장 명절상여금 지급현황

지급일	적 요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고
계		343명	8,575,000원	
2015.02.13	2015. 반장 설 상여금 지급	86명	2,150,000원	
2015.09.18	2015. 반장 추석 상여금 지급	87명	2,175,000원	
2016.01.29	2016. 반장 설 상여금 지급	84명	2,100,000원	
2016.09.06	2016. 반장 추석 상여금 지급	86명	2,150,000원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주의] 관련 규정에 의거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 되도록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용역계약에 따른 구비서류 징구소홀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회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제 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 1항 1호에 따라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서 등은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1조(계약의 이행보증) 및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2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 1절 3(청렴계약서의 제출)에 따라 계약 체결 시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주안6동에서는 무인경비 등 주민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와 같이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등 관련 서류 징구를 소홀하게 하였다.

[표] 주민센터 용역계약 체결 현황

일자	계약명	금액(천원)	예산과목	비고
2015.01.09	2015년 소방시설 유지관리 계약	2,400	민간위탁금	
2015.01.20	2015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와 연간 계약 체결	1,824	민간위탁금	

일자	계약명	금액(천원)	예산과목	비고
2016.01.04	승강기 유지보수 연간계약 체결	1,821	민간위탁금	
2016.01.05	2016년 소방시설 유지관리 계약	2,280	민간위탁금	
2016.01.07	2016년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와 연간 계약 체결	1,824	민간위탁금	
2016.12.12	2017 승강기 유지보수 연간계약 체결	1,821	민간위탁금	
2017.01.13	2017년 소방시설 유지관리 연간 계약 체결	1,476	민간위탁금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주의] 주민센터 각종 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에 의해 구비서류 징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자 업무 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정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회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 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은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종합감사, 산불 예방 감시근무, 행정감사, 시책추진 등으로 인하여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 격려를 위한 오찬 또는 만찬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회의·간담회·행사로 인한 식사제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업무추진비 집행해설집에 “시책추진과 관련이 없는 단순 내부격려의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다.
- 「또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발대식, 봉사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연찬회, 야유회, 간담회 등의 행사까지 확대하여 집행 불가하다.

- 그러나, 주안6동에서는 주안6동에서는 비상근무, 행정감사 등 격무로 인한 직원노고 격려 외에 일반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직원 격려 등의 목적으로 2014.11.14 등 총 20회에 걸쳐 집행하였으며, 직무활동 범위에서 단체가 주관하는 야유회 등의 행사까지 확대하여 집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표]와 같이 자생단체 야유회에 격려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기관운영비 부적정 집행현황

집행일	집행내역	금액(원)	구매처
2015.04.20	석바위시장 조합원 야유회 격려품 지급	30,000원	석바위시장마트
2016.05.12	관내 분회경로당 야유회 맞이 음료제공	20,000원	석바위시장마트
2016.05.16	석바위시장 조합원 야유회 격려품 지급	54,000원	석바위시장마트
2016.09.27	방위협의회 야유회 격려품 구입	34,000원	석바위시장마트
2017.04.17	석바위시장 조합원 단합대회 격려품 지급	57,000원	석바위시장마트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규칙」에 의해 집행되도록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회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으로 기관 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체육대회,생일 기념품,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 그러나, 주안6동에서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음료 및 차류를 구입하면서 사무관리비 성격의 슈퍼타이,유한락스,고무장갑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2016.8.8 등 8회에 걸쳐 부서운영비로 지출하였으며, [표] 와 같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격려품 등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로 예산외 집행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업무추진비 부 적정 집행현황

예산과목	집행일	집행내역	금액(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2016.09.12	추석명절 직원,환경미화원 격려품 지급	360,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6.11.28	공익 및 사회복지 도우미 중식 제공	24,000원
	2017.01.17	환경미화원 설 명절 격려품 구입	100,000원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도록 업무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회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 IV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발급절차의 관리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 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주안6동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출전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으며, 감사일 현재 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미흡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사회복지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 위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및 발급된 자동차 표지는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의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 주안6동에서는 [표] 와 같이 정** 등 2명은 보호자 명의의 차량으로 감사일 현재 대상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등의 업무에 미흡한 사실이 있음.

[표]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미흡 현황

연 번	대 상 자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운전자 성명	표지 유형	발급일자	미흡현황
	성명	생년 월일	장애 유형						
1	정**	-	지체	-	이**	이**	보호자	2017.05.04	소유주 전출
2	고**	-	시각	-	천**	천**	보호자	2017.03.10	소유주 전출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시정]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
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말소된 장애인 복지카드 미 회수(미 폐기)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사회복지

- 장애인등록법 제 32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하면 같은 법 제 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함.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를 회수 및 폐기해야하며, 장애등록 취소 또는 같은 법 제 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서식)을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그러나, 주안6에서는 [표] 와 같이 장애인등록카드가 말소된 신** 등 3명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감사실 현재까지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를 회수 및 폐기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장애인복지카드 미회수(미폐기)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말소/정지일자	말소/정지 사유	비고
1	신**	-	2013.08.05	등급 외 말소	
2	윤**	-	2013.05.24	재진단 미이행 말소	
3	전**	-	2016.04.19	사망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시정]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장애인복지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를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관용차량 정비대장 미 작성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관용차량관리

○ 인천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4조(기록관리)에 의하면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 7호 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구 산하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1호 ~ 2호 : 생략
3. 차량유류수불부 : 별지 제 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 11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 12호 서식

○ 그러나, 주안6동에서는 [표] 와 같이 11건에 대해 관용차량을 수리하고 차량정비대장에 기록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표] 관용차량 수리 등 정 비 현황

예산과목	일자	적 요	금액(원)	비고
공공운영비	2015.06.17	관용차량 적재함 설치	66,000	
	2015.12.01	관용차량 엔진오일 및 기타부품 교체	225,700	
	2016.04.20	관용차량 썬팅 및 선풍기 장착	146,000	
	2016.10.05	관용차량 타이어 교체	220,000	
	2016.12.12	관용차량 후방카메라 설치	120,000	
	2016.12.14	관용차량 엔진오일 및 기타 부품교체	179,200	
	2017.03.29	관용차 앞 범퍼 교체	230,000	
	2017.04.26	관용차 적재함 접이식 볼트 설치	33,000	
	2017.05.22	관용차 수리비(에어컨 호스 교환) 지출	140,000	
	2017.05.16	관용차 에어컨 가스완충 및 필터 교체	86,500	
	2017.05.15	관용차 와이퍼 교체	29,300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시정] 「인천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정비대장에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소방시설 안전관리 소홀

기 관 명 주안6동

관 계 분 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같은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사항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안6동 주민센터에서는 본관 옥상 비상구 출입문이 잠겨 있었으며, 화재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경로를 나타내는 안내도를 미 설치하여 근무자 및 출입하는 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주안6동장은

[시정]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옥상 비상구 출입문 개방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각 층에 피난안내도를 설치하여 비상 시 이용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